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3년 제공계획(기준정보)

2023. 1.

전라북도

목 차

1. 사업개요 ····· 1

2. 사업별 세부내용 ····· 5

□ 기준정보 유의사항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법령 ····· 5

□ 사업별 세부 기준정보 ····· 6

1) 【01081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6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11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3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16
5)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 ····· 18
6)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 20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22
8) 【131113】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꿈을 jobja' ····· 25
9) 【131213】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27
10) 【131413】 청소년지구시민학교 ····· 29
11) 【131513】 청소년을위한푸드테라피 ····· 31
12) 【160213】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 33
13) 【160313】 바른체형키성장서비스 ····· 35
14) 【190213】 실버미디어 프로그램 ····· 37
15) 【190613】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38
16) 【190813】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 41
17)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 43
18) 【2102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 ····· 45
19)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48
20) 【280113】 맞춤형복지를위한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 50
21) 【280413】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 ····· 52
22) 【99040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54
23) 【991413】 농촌여성힐링아카데미 ····· 56
24)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58
25) 【991713】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 ····· 60
26) 【991913】 스마트 도시(김제)지역 인재 육성 ····· 62
27) 【992113】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행복드림 서비스 ····· 64
28) 【992313】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66
29) 【992413】 중장년 정서지원서비스(신규) ····· 69

2022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

1. 사업개요

번호	사 업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계	29개 사업					
1	【01081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시장형)	임상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를 바탕으로 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위험군아동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부안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중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이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시군 (도개발)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클래식 및 국악 교육을 통한 정서순화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8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아동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개발)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건강상태점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서비스 (A : 수중운동 / B형 : 마루운동)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단일등급 A수중: 108 B마루: 60	단일등급 A수중: 12 B마루: 1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5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지체뇌병변, 근위축증, 척수장애아동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시군 (전국사업)
6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 요법, 체형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이상 지체,뇌병변 장애 또는 근골격, 순환신경계질환자	1등급: 151,200 2등급: 134,400 3등급: 117,600	1등급: 16,800 2등급: 33,600 3등급: 50,40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자기관리,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180	20	전시군 (시군개발)

번호	사 업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8	【131113】 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꿈을 jobja'	비전형성,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3세~만24세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익산
9	【1312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리더십,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부모상담 등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비전형성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가능) * 단, 임실군·순창군만 5세 ~ 만16세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	【131413】 청소년 지구시민학교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자기비전을 형성. 전 과정 포트폴리오 및 자기 보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3세~만18세 (위 연령대 이외 중고등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김제, 완주, 진안, 장수
11	【131513】 청소년을 위한 푸드 테라피	문화소외지역 청소년기 정서적 안정 및 불안심리 감소를 위한 자기치유 및 자아 발견, 자존감 향상활동, 섭식장애 예방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10세~만18세 학교부적응 및 문제행동 청소년	1등급: 144 2등급: 128 3등급: 112	1등급: 16 2등급: 32 3등급: 48	정읍, 진안, 장수
12	【160213】 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비만 및 허약체질 아동에게 알맞은 운동 계획 수립과 맞춤운동 지도 및 영양관리 서비스	- 만5세~만18세 경도비만이상 아동,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이하 아동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주, 군산, 정읍, 남원
13	【160313】 바른체형키성장운동 서비스	체계적인 진단 및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신체균형 향상 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위 연령대 이외 초등·중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신체불균형 아동·청소년	1등급: 180 2등급: 160	1등급: 20 2등급: 40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14	【190213】 실버미디어프로그램	노인대상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교육, 뉴스 및 프로그램 제작교육, 다큐 제작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	180	20	정읍

번호	사 업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15	【190613】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의 치매예방, 정서지원, 문화여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	144	1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16	【190813】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서비스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1등급 : 164 2등급 : 144	16	군산, 진안, 무주, 장수
17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 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7세~만18세 장애청소년, 척추측만 청소년 및 정서적 문제행동 청소년	1등급: 180 2등급: 160	1등급: 20 2등급: 40	군산, 익산, 정읍, 김제
18	【2102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만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단, 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AC 중재가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4등급: 12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80	남원
19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다문화교육 및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형성 및 리더십 증진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가능) -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
20	【280113】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문화여가관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	110	10	순창, 부안
21	【280413】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	등록장애인 재활을 위한 수중운동재활 및 운동인지 재활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 이상 등록장애인 (청각 및 시각 제외 단,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동재활 가능)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주

번호	사 업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22	【99040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만18-39세 인바디 측정결과 과체중 이상(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	216	24	전시군 (복지부 개발)
23	【991413】 농촌여성힐링아카데미	여성농부의 기초체력 증진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몸살림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25세~64세이하 완주군내 농지원부 등록가구, 완주군 3년이상 거주 기혼여성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완주
24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 예방,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 만35세 이상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예방이 필요한 성인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4등급: 12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8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부안
25	【991713】 복지사각지대 마을종합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	144	16	김제, 부안
26	【991913】 스마트도시(김제)지역 인재 육성	아동청소년의 미래비전 형성 및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산업형 인재 양성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8세~만18세 -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김제
27	【992113】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 행복드림 서비스	저소득 중장년층 중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정서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	- (소득기준폐지) 만40~59세 정서, 신체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	162	18	정읍
28	【992313】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영양상태를 관리하여 건강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적 서비스 필요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혼자 식사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등급: 225 2등급: 200 3등급: 175	1등급: 25 2등급: 50 3등급: 75	전주
29	【992413】 중장년 정서지원서비스(신규)	중장년층의 예술활동을 통하여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40~59세 혼자 식사생활이 예술활동을 통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 예방을 원하는 자	180	20	임실

2. 사업별 세부내용

◀ 1. 2023년 기준정보 유의사항 ▶

○ 2022년에 선정되어 2023년에 종결하는 이용자는 2022년도 기준정보가 적용되며, 2023년에 신규 이용자로 선정되거나 재판정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는 2023년 기준정보를 적용(하반기 변경사항은 하반기 이용자부터 적용)

○ 재판정 이용 신청자는 신규 이용 신청자와 동일한 신청서류와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를 추가하여 제출함(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는 중간보고서도 추가 제출 필수)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 자격기준 보다 국가자격증 또는 상위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 등록된 자격만 인정

◀ 2.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법령 ▶

제공인력 자격	근거 법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법」제7조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안마사	「의료법」 제82조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
유치원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제12조
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고등교육법」 제2조, 제35조, 제50조, 제54조, 제58조
전통문화예술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초등학교정교사,전문상담교사,특수학교정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제17조

1 【01081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목 적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만18세 이하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언어발달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 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에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 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부모 보고형』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2. 욕구판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자격기준은 일치해야 함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이후, 학사는 실무경력 5년 또는 석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2급, 학교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경계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시장형 월 20만원, 서비스 제공자 슈퍼바이저)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54,000원 (시장형 74,000원)

※ 단, 시장형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 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의 내·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 실행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제공과 중재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 유형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 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아래 [별표1] 참고	주 1회 월 4회	50분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 집단규모에 따른 회당 서비스 시간
① 1:1 50분(기본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② 1:2 70분(기본프로그램 50분 + 부모상담 20분)
③ 1:3 90분(기본프로그램 60분 + 부모상담 30분)

[별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심리 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 유아는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제외 가능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1]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 심리평가 결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DI,K-CBCL, K-ARS, RCMAS, K-PRC. K-CYP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 활용(단, 만 3세 이하의 유아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 제외 가능)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 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 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 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 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 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 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아존중감(Rosenberg) : 효과성 관리 보고,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또는 언어프로그램 대상자는 언어 발달척도(Pres, Selsi, Revt), 조음척도(UTAP)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인력 1명당 2~3명 이내 *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소집단 프로그램(1:2~1:3) 허용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전라북도 전 시군(도개발)</td></tr>
<tr><td>목 적</td><td>• 조기선별(screening)과 중재(intervention)를 통해 ‘환경적 문제’(빈곤·다문화·조손·한 부모·대체 가정)에 의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 이하 영유아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table>
<tr><th>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r><td>-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td><td>- 건강검진 검사결과</td></tr>
<tr><td rowspan="2">-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td><td>-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td></tr>
<tr><td>- 보건소장 추천서(직인)</td></tr>
<tr><td>-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Ⅱ, K-CDRⅡ,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td><td>-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td></tr>
<tr><td>-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td><td>-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 일치해야 함(예시-언어발달영역 :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 또는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td></tr>
</table>

<table>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r><td rowspan="4">기본서비스</td><td>발달기초영역</td><td>-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td><td rowspan="4">주 2회
월 8회</td><td rowspan="4">60분</td></tr>
<tr><td>언어발달영역</td><td>-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td></tr>
<tr><td>초기 인지영역</td><td>-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td></tr>
<tr><td>정서·사회성영역</td><td>-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td></tr>
<tr><td colspan="2">부가 서비스</td><td>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td><td colspan="2">-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td></tr>
</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잠재적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 언어, 초기인지, 정서 및 행동 관련 검사 실시
– 2단계 :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조기중재서비스 실시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 5단계 : 사후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td></tr>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해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td></tr>
<tr><td>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td><td>•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아동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로 향상도(정상범위 내) 측정검사 실시
※ 이와 별도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효과성 입증 제출용 K-CDR-R 향상도 제출 (이용자 전체)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이용자 가능
※ 1:1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 조절(회당 40분 서비스)
➲ 부모가 원하거나, 기관장의 소견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계획 시 기록
(1:1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기록)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또는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td></tr>
</table>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시군개발)</td></tr>
<tr><td>목 적</td><td>•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 ~ 만18세 아동
• 욕구기준
<table>
<tr><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r><td>- 지침「참고2」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td><td>-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td></tr>
<tr><td rowspan="3">-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td><td>-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td></tr>
<tr><td>-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td></tr>
<tr><td>-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td></tr>
<tr><td>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동 순위인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td><td>-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등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클래식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악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전통문화예술(악기)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자
③ 문화예술교육사(전통악기)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td></tr>
<tr><td>서비스 가격</td><td>•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td></tr>
</table>

<table>
<tr><td>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td></tr>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 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 시군의 승인(공문)을 득한 이용자에게만 월4회(주1회, 1일 연속 이용) 가능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
<tr><td rowspan="8">기본서비스</td><td rowspan="3">1.</td><td>A형: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오케스트라 및 관현악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악기 인정</td><td rowspan="3">주 2회
월 8회</td><td>60분</td></tr>
<tr><td>B형: 전통국악 프로그램 이론 및 실기</td><td>120분</td></tr>
<tr><td colspan="2">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치유 서비스 제공</td><td>1:1 40분
1:6 60분</td></tr>
<tr><td colspan="2">3. 일반 연주회 관람</td><td>반기별 1회</td><td rowspan="4">결과보고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td></tr>
<tr><td colspan="2">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td><td>연 1회</td></tr>
<tr><td colspan="2">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td><td>제공기간 중</td></tr>
<tr><td colspan="2">6.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td><td>연 1건 이상</td></tr>
<tr><td>부가서비스</td><td colspan="2">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 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및 국악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음악교육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td></tr>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td></tr>
</table>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 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강점난점 척도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A형 클래식악기) 3명 이내, (B형 전통국악기)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인력 1명당 6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목 적	•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맞춤형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욕구기준 / 제출서류 -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 /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 -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완주, 진안, 고창, 임실, 남원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만 가능 *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서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11개 만성질환자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중 정신 및 행동장애 제외 ①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② 고혈압성 질환 : I10-I15 ③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B18, B19, K70~K77 ④ 당뇨병 : E10-E14 ⑤ 호흡기결핵 : A15~A16, A19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J44 ⑦ 대뇌혈관질환 : I60~I69 ⑧ 두개 내 손상 : S06 ⑨ 갑상선의 장애 : E00~E07 ⑩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③ 수중운동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수중운동지도 실무경력 2년 이상 ④ 마루운동은 에어로빅, 요가 등 실내운동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1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수중운동 : 월 12만원, 마루운동 : 월 7만원)

구분	수중운동		마루운동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서비스가격	108,000원(90%)	12,000원(10%)	60,000원(90%)	10,000원(10%)
	120,000원		7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완주, 진안, 고창, 임실, 남원 거주 만성질환자만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건강상태 점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건강상태 점검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연 3회 종료시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2회 월 8회	90분

※ 1회 90분은 준비 및 정리 운동, 샤워 및 환복 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 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신체건강증진척도,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연3회)
–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2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5 【070113】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지체 및 뇌병변 장애판정자 *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한 자	- 제출서류 없음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재판정 해당년도 초기상담기록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84,000원	3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 단, 신규 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 2명 이상 있는 가구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 → 2등급, 2등급 → 1등급)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7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 12개월 정기점검 : 연 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제한 없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보호자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제공인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초기상담기록지로 갈음
- 집단규모 : 해당 없음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불가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6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목 적	• 노인성 질환자 및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기준 및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만60세 이상 질환자(「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포함) 5.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60세 미만인 자 6. 재판정 신청자거나 가구원이 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51,200원	16,8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134,400원	33,6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117,600원	50,4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종료 시 효과성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건강증진도 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이용자의 거동 가능 정도에 따라 기관방문과 재가방문 선택하여 제공 가능 (초기상담 시 재가방문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의 질병 및 신체상태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함)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시군개발)
목 적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정신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없음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욕구기준	제출서류(이하 택1)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코드 확인서류 가능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 F00, F02이거나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 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 우선순위 대상자 1.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2. 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연계된 자 3. 정신과적 소견자 : 정신과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발급 제출한 자 (정신과 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가능) 4.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5.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① GAF척도점수 31점~70점 사이 (31점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 ② Beck척도 자살위험군(신청기준 참조)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Beck척도에 따른 서비스 신청기준〉

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평가	비고
16~19점	14~17점	9~11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	
20~23점	18~21점	12~14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우선고려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정신장애등록코드 및 진단코드가 있는 경우만 재판정(GAF, Beck척도로는 재판정 신청 불가)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또는 교육 필수
– 제공인력은 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함
→ 부가서비스의 개인별 사례관리 양식에 슈퍼비전 내용 기재(상·하반기)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0,000원	2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광역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마음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에 포함하여 재판정 횟수 산정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8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의 특성(증상,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대면상담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주 1회 월 4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부 가 서 비 스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월 1회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개인별 수퍼비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한 중간/최종 점검	연 2회 상·하반기	
	〈가족교육 또는 여가활동 선택적 제공〉 1. 가족교육(집단규모 제한 없음)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분기별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수립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 일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측정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제공인력,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정신보건센터 연계 :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 대상로 선정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단순 정신건강의학평가척도(BPRS)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단, 기본서비스 중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은 1:5 가능
② 부가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재가방문+집단활동+기관방문)
–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만 기관방문형, 추가확보시설 제공 가능
※ 제공기관 등록 시 재가방문형 기준으로 등록하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다만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확보시설 보고 (대중이용시설 제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8 【131113】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꿈을 jobja'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td></tr>
<tr><td>목 적</td><td>•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13세~만24세
• 욕구기준
<table>
<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r><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td>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td><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26,000원</td><td>14,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td><td>98,000원</td><td>42,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td></tr>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초기 욕구사정과 맞춤형 서비스 설계 통해 청소년 커리어를 높이고, 사회 적응 탄력성 제고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r><td rowspan="4">기 본 서 비 스</td><td colspan="2">심리검사 및 상담</td><td>사전사후</td><td></td></tr>
<tr><td rowspan="2">비전 프로그램</td><td>비전형성 프로그램(1~3개월 차)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성품 리더십</td><td rowspan="2">주 1회
월 4회</td><td rowspan="2">60분</td></tr>
<tr><td>진로탐색 프로그램(4~12개월 차)
- 적성검사 및 직업탐험 활동</td></tr>
<tr><td colspan="2">직업교육(4~12개월 차)
- 바리스타, 네일아트, 피부미용, 드론교육, 3D프린터 교육 등 맞춤형 직업교육</td><td>주 1회
월 4회</td><td>120분</td></tr>
<tr><td rowspan="2">부 가 서 비 스</td><td colspan="2">문화여가 프로그램</td><td>연 1회 이상</td><td></td></tr>
<tr><td colspan="2">서비스 세부 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able>
※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 진행시 재료비 부담이 큰 관계로 공동재료비의 월별 관리함
(네일아트 기관 3:본인 7, 그 외 재료비 기관 5:본인 5)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선정된 대상자 사전검사와 대상자 욕구사정 및 부모 상담 통해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단계 :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 3단계 : 서비스 제공보고서(상담결과 안내문)발송 및 서비스 종결 사후검사 실시</td></tr>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td></tr>
<tr><td>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td><td>•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부가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3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td></tr>
</table>

9 【131213】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td></tr>
<tr><td>목 적</td><td>•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포함, 임실, 순창은 만5~16세)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김제시의 경우 스마트도시(김제)지역인재육성과 중복지원 불가
<table>
<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r><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td>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td><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유아교육학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년도부터 자격기준에서 삭제. 다만 '19. 12. 31.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26,000원</td><td>14,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td>98,000원</td><td>42,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td></tr>
</table>

<table>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A형 월 8회, 주 2회/ B형 월 4회, 주 1회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하여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table>
<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
<tr><td rowspan="2">기 본 서 비 스</td><td rowspan="2">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td><td>A형 : 주 2회 월 8회</td><td>A형 : 90분</td></tr>
<tr><td>B형 : 주 1회 월 4회</td><td>B형 : 90분</td></tr>
<tr><td></td><td>체험활동</td><td>B형 : 월 1회</td><td>B형 : 480분</td></tr>
<tr><td>부 가 서 비 스</td><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able>
※ A형 : 주2회/월8회(회당 90분), B형 : 주1회(월3회)+월1회 체험(회당 90분+48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td></tr>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td></tr>
<tr><td>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td><td>•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td></tr>
</table>

⑩ 【131413】 청소년지구시민학교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td></tr>
<tr><td>목 적</td><td>• 농촌지역 청소년의 자기탐구, 진로탐색, 글로벌 교육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미래비전을 세워 책임 있는 지구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3세~만18세 이하 청소년
(단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2세 이하 이거나 만18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욕구기준
<table>
<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r><td>자기탐구, 진로탐색, 글로벌 교육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td>우선순위 대상자
1. 교육기관 교사, 학교장 추천이 있는 청소년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이 있는 청소년
3. 희망복지지원단 추천이 있는 청소년</td><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추천서(직인)
3.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인문학
① 인문사회학, 사회과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 전문학사인 경우 아동청소년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학사인 경우 아동청소년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①항의 학과 이외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아동청소년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체험활동 프로그램
①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 교사 및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청소년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청소년 인성교육, 라이프 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 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지역의 소상공인으로 3년 이상 경력자</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26,000원</td><td>14,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98,000원</td><td>42,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td></tr>
</table>

<table>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A형 월 4회, 주 1회/ B형 월 8회, 주 2회
– 청소년 연령별, 초기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 설계하고 그룹 활동 진행으로 진로 및 인성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자기 비전을 가짐으로써 전 과정 포트폴리오 및 자기보고서 완료
– 이용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 프로그램 선택 제공,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 다만 제공기관이 제공기관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용자별로 선택 불가)
<table>
<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
<tr><td rowspan="3">기 본 서 비 스</td><td rowspan="2">인문 수업 : 강의 및 토론 포트폴리오, 자기보고서 (연 1회 이상)</td><td>A형 : 주 1회 월 4회</td><td>A형 : 120분</td></tr>
<tr><td>B형 : 주 2회 월 8회</td><td>B형 : 60분</td></tr>
<tr><td>체험활동 : 인문수업과 연계된 체험활동 체험활동보고서</td><td>분기별 1회</td><td>B형 : 240분</td></tr>
<tr><td rowspan="2">부 가 서 비 스</td><td>캠프활동</td><td>연 2회 이상</td><td>240분 이상</td></tr>
<tr><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이용자의 상태를 감안한 선별적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td></tr>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td></tr>
<tr><td>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td><td>•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척도(Rosenberg) 및 자기효능감 검사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td></tr>
</table>

11 【131513】 청소년을 위한 푸드테라피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td></tr>
<tr><td>목 적</td><td>• 청소년기의 불안 심리의 감소를 위해 음식을 매개로 한 푸드테라피 활동으로 문제행동 예방</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10~만18세 이하 청소년
• 욕구기준 : 정서적 문제행동이 있는 청소년
<table>
<tr><th>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r><td>- 병원</td><td>- 진단서 또는 소견서</td></tr>
<tr><td>- 교육기관 교사,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td><td>- 추천서(직인)
* 단, 교사추천(교사 서명)</td></tr>
<tr><td>-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td><td>- 추천서(자격번호, 서명)</td></tr>
<tr><td>-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장(또는 교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2. 장애아동 및 발달재활대상 청소년
3. 시·군 맞춤형복지팀 연계 청소년</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td></tr>
<tr><td>제공기관
및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심리, 상담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44,000원</td><td>16,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28,000원</td><td>32,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td><td>112,000원</td><td>48,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td></tr>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청소년기의 불안 심리의 감소를 위해 음식을 매개로 한 심리상담
<table>
<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
<tr><td>기 본 서 비 스</td><td>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음식을 매개로 푸드테라피 기법의 심리상담 제공</td><td>주 1회
월 4회</td><td>50분</td></tr>
<tr><td>부 가 서 비 스</td><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청소년의 상태를 감안한 선별적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td></tr>
</table>

<table>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td></tr>
<tr><td>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td><td>•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척도(Rosenberg) 및 자기효능감 검사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8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td></tr>
</table>

⑫ 【160213】 스포츠활동 건강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목 적	•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5세~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 전주시의 경우 장애아동 대상자 제외(장애인운동재활 서비스로 연계) ①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아동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② 건강관리 필요한 허약한 아동 포함 가능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아동·청소년 * 중복이용 제한 : 문체부 스포츠바우처,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관련부서 확인)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 제출서류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또는 확인서, 예 : 인바디검사지)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또는 확인서, 예 : 인바디검사지)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 대상자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22. 7월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08,000원 /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96,000원 /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 84,000원 / 3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주 2회, 월8회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 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1. 운동처방 : 대상 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 / 주 2회 월 8회 / ① 일반아동 90분 ② 장애아동 및 특수 지원대상 60분 기본 서비스 / 2.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기본 서비스 / 3.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 체성분검사, 기초체력측정 검사 부가 서비스 / - 계절 맞춤형 스포츠 활동(방학중) 또는 성과발표 및 대회참가 / 연 2회 이상 / 240분 부가 서비스 /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 월 1회 이상 /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이용자에게 제공) – 4단계 : 월별 건강/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 – 5단계 :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부모교육 실시 – 6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7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기초체력증진(PAPS), 자존감 척도(Ros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장애아동 및 특수지원 대상 아동) 제공인력 1명당 7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⑬【160313】바른체형키성장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td></tr>
<tr><td>목 적</td><td>• 체계적인 진단 및 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신체균형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도모</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6세 이하거나 만17세 이상인 경우도 대상자로 선정
• 욕구기준
* 농촌지역 면 단위 아동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 단 면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해당 시군 동 및 읍에 거주자 가능
<table>
<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r><td>- 건강한 신체 균형발달을 원하는 아동청소년</td><td>- 제출서류 없음</td></tr>
<tr><td>- 우선순위 대상자
1. Scoliometer(USA)를 이용하여 체간 회전각이 6° 이상인 아동·청소년
2. TMM(tape measure method) 방법을 이용해 하지 길이에 10mm이상 차이가 있는 아동 · 청소년
3. 신체균형능력 검사 평점 70점 이하 아동·청소년</td><td>- 하지길이 평가 소견서 또는 신체균형능력 검사지</td></tr>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체육학과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FT(FunctionalTraning) 1급과 자세교정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체육학과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FT(FunctionalTraning) 1급과 자세교정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③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로 FT(FunctionalTraning) 1급과 자세교정사 1급 취득자</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td></tr>
<tr><td>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균형 향상 운동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
<tr><td>기 본
서비스</td><td>운동프로그램
- 체형교정운동, 감각통합운동, 성장운동</td><td>주 2회
월 8회</td><td>50분</td></tr>
<tr><td rowspan="2">부 가
서비스</td><td>- 개별관리(맞춤형운동계획 수립 및 영양정보 제공)</td><td>종료시 1회</td><td></td></tr>
<tr><td>-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
</table></td></tr>
<tr><td>안전관리기준</td><td>•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td></tr>
</table>

<table>
<tr><td></td><td>•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td></tr>
<tr><td>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td><td>•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신체균형검사, 자아존중감척도(Rogenberg)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인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td></tr>
</table>

14 【190213】 실버미디어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정읍시
목 적	• 컴퓨터 및 사진촬영, 영상촬영·제작 등의 미디어 교육활동을 통해 컴퓨터 및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경험을 재조명하여 봄으로써 노인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 욕구기준 : 미디어 교육활동을 통해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방송영상 및 미디어영상 관련 방송국, 프로덕션 등의 영상 관련 직종에서 근무경력이(촬영, 편집, 연출 분야) 6개월 이상인 자 ○ 영상촬영, 영상편집,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GTO, ITQ, 스마트폰지도사 등의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 180,000원 / 2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노인 대상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교육, 뉴스 및 프로그램 제작교육, 인터넷 방송교육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1. 스마트폰 및 미디어 기본과정 (6개월) - 인터넷 기초사용법, 스마트폰 기본사용법, 스마트폰 환경 설정 어플 설치 및 삭제, 카카오톡 활용 및 이용 2.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과정 (4개월) - 미디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방법, 영상제작에 필요한 어플 설치 및 활용 3. 개인별 영상 제작(2개월) : 개인별 영상 작품 만들기 / 주 2회 월 8회 / 12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 상담을 통한 욕구조사 및 기초 지식 점검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여가만족도 척도,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5 【190613】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 은퇴자 및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노인 우울감 및 인지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 욕구기준 : 정서적 지지 및 사회 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맞춤형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욕구기준 / 제출서류 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면단위 거주자 2. 독거노인 3. 부부 단독세대 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 주민등록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읍면 거주자에 한해 재판정 인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1. '19.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0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2.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1. 이모작프로그램 가. 취업연계프로그램 ○ 개설하는 민간자격 취득과정에 해당되는 강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민간자격증취득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경력 증빙) ○ 민간자격취득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민간자격 취득과정 강사활동을 하는 자(교육기관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빙) 나.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취미 및 자원봉사 교육 해당 민간자격 취득자 ○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해당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회공헌프로그램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치매예방프로그램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교육학 또는 실버복지, 노인복지학과 등 노인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3개월 이상
ㅇ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치매예방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정서지원프로그램
ㅇ 임상심리사
ㅇ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정서재활프로그램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ㅇ 원예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재활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ㅇ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건강관리프로그램
ㅇ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과 운동종목 동일)
ㅇ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신체건강운동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ㅇ 체육 및 운동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레크리에이션 학과 제외)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ㅇ 신체건강운동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5.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ㅇ 이모작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자.
6. 가족과 의사소통 기법 관련 특강
ㅇ 특강 주제 관련 부모교육 및 특강 경력 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44,000원	1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기관은 이용자를 서비스별로 그룹핑하여 서비스 제공(단, 집단규모는 준수해야 함)
– 초기상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 결정
– 서비스는 선택형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으로 월4회 주1회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선택형 프로그램〉 ※ 선택형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1. 이모작 취업연계 프로그램 : 취업으로 연계 가능한 민간자격 과정 교육 - 동화구연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 비누공예지도사, 한지공예지도사, 토탈공예지도사,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 취득과정 교육 ※ 수료증 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2. 이모작 사회공헌 프로그램 : 공연 및 재능기부 활동,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교육 - 댄스 스포츠, 마술,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 - 자서전쓰기,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자교육 등 ※ 공연활동 또는 자원봉사활동 연1회 실시	주 1회 월 3회	8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3. 치매예방 프로그램 : 소근육, 창작, 손근육, 과거회상 등 - 뇌운동, NIE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4. 정서지원 프로그램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프로그램 - 원예 재활, 미술 재활, 음악 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 재활 관련 프로그램 5. 건강관리 프로그램 - 마루운동, 요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산, 트래킹, 노인 신체건강 관련 운동 종목 및 보건소 방문 등		
	〈필수프로그램〉 6. 문화여가증진 프로그램(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등) -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박물관 및 전시회 체험, 관광지 및 유적지 문화 체험, 지역축제 참여 활동 - 기관 자체 공연 및 전시회 활동 *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전용면적 기준 준수 ** 장소가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인 프로그램은 연 12회 중 연 6회까지만 가능하고 연 6회 이상 외부 프로그램 운영	주 1회 월 1회	120분 이상
부가 서비스	개별관리	분기별 1회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여가만족도 척도,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이상 향상
• 집단 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1 : 다수(차량이동 시 차량 1대당 제공인력 1명)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6 【190813】 노인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목 적	•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지원(정리정돈, 청소, 방역, 개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욕구기준 :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 ① 시군의 자체 주거개선 및 잔수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주거관리 서비스 미제공 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실내환경정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 미제공 → 잔수리 및 방역 서비스 제공

욕구기준	제출서류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2.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3.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2, 3,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읍면 거주자에 한해 재판정 인정

항 목	내 용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주거관리 서비스 ① 집수리 및 청소(방역) 관련 자활기업 경력자 및 재직자 ②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및 청소(방역)사업 관련 경력 6개월 이상 자 ③건축 및 인테리어(문화재 수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소지자. 단, 도배, 장판 자격증 제외 ④ 주거개선 관련 업체 또는 지자체의 기술교육 수료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 및 방역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③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등급 월 18만원, 2등급 월 16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 : 기본	144,000원	16,000원

※ 1등급 원거리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등록상 거주자(시군 소재지 3km이상 등), 군산의 경우 선정 후 제공기관과 해당 제공자의 거리가 3km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등급변경 진행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 가구의 욕구에 따라 주거관리, 실내.외 정리정돈(청소),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월1회 개별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례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필요시 타 사업의 주거복지 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1~3번 서비스 월 3회, 주 1회, 4번 서비스 월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정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필요시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분기별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계약, 초기상담, 사전검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해당 가구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종료 및 보고서 작성, 사후 검사(종료 시 이용자 만족도 검사 의무 실시)
(타 예산 주거복지 사업 연계 등 부가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공)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안전점검(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사고유형별 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안전교육 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연2회) 대상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이용자배상(상해)보험 등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이용자 만족도(복지부 지침의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13, 14, 15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대비 10% 향상
• 상.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 집단규모 : 기본서비스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7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목 적	• 장애아동 및 ADHD, 인터넷과몰입, 척추측만증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게 승마를 매개로 한 정서행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 예방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장애인은 160%), 만7세~만18세 •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 제출서류 -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발달장애 아동 -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 -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지침「참고2」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추천서(직인)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만 가능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재활승마교관 ①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② 「말산업육성법」제12조에 의한 재활승마지도사(농축산부) ③ 승마관련 민간자격증, 승마경기 지도사 소지자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심리상담 등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80,000원 /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160,000원 / 4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만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대상 장애아동에 한함) 서비스 구 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1:1~1:3)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집단규모 12명 이하)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 주 1회 월 3회 / 60분 집단상담 / 월 1회 / 60분 부가서비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 월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개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 – 2단계 :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욕구 파악 –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부모 제공)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개정판 아동정서불안척도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교감활동, 재활승마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서비스 시작 2개월 이후 비장애아동청소년 1:3, 장애아동청소년 1:2 ② 집단상담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⑱【210213】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남원시
목 적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만24세 미만(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 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중복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 제출)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 제출서류 - 등록장애인: 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제출서류 없음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가 예견되어 AA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의사 진단서 -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검사결과지 ▶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을 위한 검사기기 및 결과 기준 1) 표현어휘력검사: 원점수 25점 미만 2) KM-BCDI : 표현낱말 수 51개 미만 3) SELSI: 표현언어 획득점수 33점 미만 4) U-TAP 또는 APAC 검사 결과 동일연령 또래집단 평균과 비교했을 때 - 2SD미만의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이는 경우 ※ 위의 4가지 검사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과(즉, 1개만 있어도 됨)가 있는 경우 AAC 중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장비기준 ① 각 종류별 최소 1가지 이상 총 3가지의 AAC 기기를 구비 (개인별 맞춤 AAC 기기 사용) – AAC 기기 종류 : 음성합성 AAC 기기(예: 칩톡, 오케이톡톡 등), TTS 기반 하이테크 AAC 기기(예: 마이토키앱, 마이토키 pc, 스마트 AAC, 나의 AAC, 키즈보이스 등), 로우테크 AAC 기기(예: 마이토키보드, 상징카드,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판 등) ② 최소 2가지 이상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조기기 구비 – 접근성 보장 위한 보조기기 종류 · 스위치(예: 헤드스위치, 빅레드스위치, 조이스틱스위치, 볼스위치), 인터페이스, 거치대, 마운팅, 안구마우스(eyetracker), OTG 케이블, 자세보조기기 등 • 제공인력 ①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 주관하는 [AAC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②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 주관하는 [AAC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석사 이상 특수교육 전공자(특수교육 석사 또는 박사 졸업)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등 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80,000원 /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160,000원 /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140,000원 /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170% 이하) / 120,000원 / 8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1)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AC 검사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 - 직접관찰 :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요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2.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AC 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 고려하여 선정 3. 기기 사용 훈련 - AA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A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A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로도 진행되어야 함 4. AAC 중재 - 매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음 / 주 1회 (월 4회) / 60분 (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5.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AC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 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AC 사용 중재해야 함 ☞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조기교실 등) 지원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의 진전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특수교사와 자료 공유해야 함.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사(예: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과교사) 또는 또래(예: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또래)를 대상으로 AAC 사용에 따른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분기별 1회 - 총 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진행.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가지 이상 진행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 가족지원 가정환경 내에서 AAC 기기의 사용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예: 형제, 자매, 조부모 등)에 대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에서 상점, 지하철 또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역사회 놀이터 또래 등 대화 상대방을 대상으로 AAC 대화 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부 가 서비스	6. 부모교육 및 상담 -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반기별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AAC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단계별 아동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표현어휘력 검사, KM_BCDI 검사, SELSI 검사, U-TAP 또는 APAC 검사 택1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자아존중감척도(Rogenberg)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인 이내 이용자 가능(단, 부모교육 및 상담 1:5인 이하로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9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 글로벌 시대에 필수인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확산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아동 *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7세 미만도 포함 • 욕구기준 욕구기준 / 제출서류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3. 다자녀(2명이상)가정 아동 ※모든 순위 당해연도에 세대내 1명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2,3. 제출서류 없음 • 재판정 - 1등급 이용자 중 면단위 거주자만 가능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외국어 관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의 경우 외국어 교과 전담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외국어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결혼이민자로서 ① 여성인력개발원, 평생교육원, 지자체에서 인증한 해당 외국어강사 교육 수료생 ② 결혼이민 전 해당국 또는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62,000원 /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144,000원 /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 126,000원 / 54,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1등급 이용자 중 면 단위 거주자만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자기주도학습코칭, 비전형성프로그램(학업성취도 평가, 발표회, 전시회 등)을 통한 리더십 증진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 외국어 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 마인드 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마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	주 2회 월 6회	A형:60분 (1:2, 90분) B형:90분
	2.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과 정서 함양 프로그램	월 2회	
부 가 서비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 다문화 체험전시회 또는 성과향상대회	연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 2단계 : 해당 가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학업성취도 등에 관한 부모 상담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청소년 글로벌 역량증진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A형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형제자매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1:2 가능, 단 회당 서비스 시간 90분 제공)
※ 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은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기본서비스 B형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③ 부가서비스 - A형과 B형 모두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A형 재가방문형, B형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⑳ 【280113】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순창군, 부안군
목 적	• 농촌 노인들의 건강관리, 치매예방,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욕구기준	제출서류
- 문화여가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농촌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 독거노인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노인운동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문화예술교육사(문화여가서비스만 해당)
※ '19.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0년 변경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10,000원	1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건강관리서비스 : 목욕관리, 수중워킹, 건강관리 기기 및 찜질을 통한 건강관리	월 2회 주 1회	80분
	치매예방서비스 : 소근육 및 손근육 활동, 작업활동, 회상프로그램을 통한 치매예방 관리	월 1회 주 1회	80분
	문화여가서비스 : 산책, 예술창작,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	월 1회 주 1회	12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건강상태(가족관계, 식습관, 질환 여부 등) 조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신체적 건강척도,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명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21 【280413】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시행 시·군</td><td>• 전주시</td></tr>
<tr><td>목 적</td><td>장애인을 위한 부가적 손상의 예방과 재활운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td></tr>
<tr><td>서비스 대상</td><td>•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 이상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table>
<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
<tr><td>- 등록 장애인(청각 및 시각 장애인 제외)
※ 단,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동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td>우선순위 대상자
1. 만7세~만18세 이하
2.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3.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td><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td></tr>
</table>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td></tr>
<tr><td>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②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일치)로 장애인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
③ 체육학 및 스포츠 재활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④ 재활운동지도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
⑤ 장애인 운동선수로 등록되어 경기 참여 경력 3년 이상된 자(단 보조강사는 비장애인과 매칭)
• 보조강사
①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로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일치하여야 함
② 체육학 및 스포츠재활학과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③ 재활운동지도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 3개월 이상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td></tr>
<tr><td>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
<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
<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td></tr>
</table>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선택활동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회당시간
기본서비스	수중운동 재활반 (집단규모 3~5(보조1인))	1. 근력, 지구력, 순발력 등 기초체력 증진 위한 수중운동 - 지적, 지체 장애인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필요시 대상자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 2 건강교육 및 정보제공 (건강증진 행동)	• 지체, 뇌변병 장애 - 1:1 월4회, 주1회 - 1:3 월6회, 주1~2회 • 지적, 자폐성 장애 - 1:1 월4회, 주1회 - 1:5 월6회, 주1~2회	① 1:1 ~ 1:3 60분 ② 1:5 90분
	운동재활반 (집단규모 1~5(보조1인))	1. 인지능력 개발 및 활동능력 확대 서비스 제공 - 폐활량 증가 근력강화 서비스 - 운동 인지 통해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 2. 건강교육 및 정보제공 (건강증진 행동)	①1:1 월6회, 주1~2회 ②1:5 월8회, 주2회	① 1:1 60분 ② 1:5 90분
부가 서비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이용자 건강관리 정보 제공	종료시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이용자의 증상에 대해 체계적 평가 및 진단을 통해 맞춤형 운동재활 선택
② 2단계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③ 3단계 : 수중운동 재활 및 운동인지 재활 서비스 체계적으로 제공
④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⑤ 5단계 : 사후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운동재활 수행평가지, TGMD2,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수중운동 – 제공인력 1명당 3명 이내 이용자 가능, 또는 제공인력 1명당 5명 이내 이용자 가능(보조강사 1명 필요) ② 운동인지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또는 제공인력 1명당 5명 이내 이용자 가능(보조강사 1명 필요)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22 【99211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 비만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18 ~ 39세 청년층 • 욕구 기준 : 인바디 측정결과 과체중 이상(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 포함)

욕구기준	제출서류
- 인바디 측정결과 BMI 과체중 이상 또는 체지방률 경도비만이상	인바디 결과지 등 욕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우선순위 대상자 :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1.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2.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제공인력 ○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216,000원	24,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12회

구분	내용	주기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평가 ※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사전검사 대비 인바디 사후 검사 3% 향상 • 집단 규모 : 1:3, 1:4(선택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23 【991413】 농촌여성 힐링 아카데미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완주군
목 적	• 여성농민에게 신체건강과 부족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25세~만64세 이하 •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 제출서류 - 완주군 내 농지원부(축산업 포함) 등록 가구 /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서 - 완주군 거주 3년 이상인 기혼여성 /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농지원부(축산업) 등록가구의 여성 2. 다문화 및 귀농귀촌여성 / -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스트레칭 및 줌바댄스) ① 무용,댄스,체육 관련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무용동작치료 또는 건강체조 및 댄스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여성 농부의 몸살림 서비스:먹거리 교육 및 요리(로컬푸드, 제철요리, 발효식품) ① 영양사, 임상영양사, 식품영양학, 식품조리학 등 식품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식품명인 및 전수자, 요리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③ 푸드테라피, 식생활교육지도사, 슬로푸드매니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우울극복 및 자존감 회복 위한 힐링 서비스 : 라이프코칭, 스트레스 관리 및 치유프로그램 등 ①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① 라이프코칭, 원예치료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타 부가서비스 ① 건강 관련 민간자격소지자로 제공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문화체험 활동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14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26,000원 /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112,000원 / 28,000원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 이하) / 98,000원 / 42,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7회, 주 1~2회 – 농촌여성들의 기초체력 증진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농촌여성들의 우울감 극복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정서지원 서비스 – 농촌여성들의 복지욕구 향상 및 삶의 활력 제공을 위한 문화체험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기초체력 증진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인바디 검사를 바탕으로 한 스트레칭, 줌바댄스 등	월 4회 주 1회	60분
	2. 여성 농부의 몸살림 서비스 - 먹거리 교육 및 요리(로컬푸드, 제철요리, 발효식품)	월 2회 (2주당 1회)	120분
	3. 우울극복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 서비스 - 라이프코칭, 스트레스 관리 및 치유프로그램 등	월 1회 (4주차 1회)	120분
부 가 서비스	- 천연제품만들기 및 천연제품을 이용한 택틸케어 체험 (분기 1회) -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연 2회)	- 분기 1회 (150분 이상) - 연 2회 (240분 이상)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선정된 대상자 사전 검사와 대상자 욕구사정을 통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단계 : 우울척도 및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
- 3단계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 4단계 : 서비스 제공보고서(상담결과 안내문)발송 및 서비스 종결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우울척도, 자존감 척도(Rosenberg)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부가서비스 - 제한없음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24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
목 적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35세 이상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욕구기준	제출서류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② 심리, 상담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이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부부소통증진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제공인력도 해당)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심리, 상담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5년, 박사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으로 학사는 실무경력 5년, 석사는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슈퍼바이저를 갖추지 못한 제공기관은 이용자 추천을 할 수 없음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주 1회 월 4회	50분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주된 호소 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
③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⑤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MMPI-2(MMPI-2RF가능), BDI, STAI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자아존중감(Rog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인 이용자 가능 (필요시 이용자 동의하에 집단 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단,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 관련 전문 치료가 요구되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에 한해 재가방문형 인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25 【991713】 복지사각지대 마을 종합복지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김제시, 부안군
목 적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맞춤형복지를위한행복한농촌마을 만들기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재판정 대상자 : 읍면 거주자에 한해 재판정 인정

욕구기준	제출서류
삶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복지사각지대 마을 주민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 면단위 마을 거주 주민	제출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신체건강관리서비스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②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영양관리서비스 ① 영양사, 조리사 ② 푸드테라피, 식생활교육지도사 등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문화여가지원서비스 ① 문화/예술/공예활동 – 해당 프로그램 관련 학과(공예,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 문학, 사회학, 철학, 관광학 등) 전공자 – 해당 과목 문화예술교육사, – 해당 프로그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② 관람 및 나들이 활동 : 사회복지사 및 신체건강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문화/예술/공예활동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44,000원	1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 및 문화여가서비스 지원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신체건강관리서비스〉** - 혈압, 혈당 체크, 건강상담, 기계식물리치료 등 - 일상적인 건강 체크 및 건강상담 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영양관리서비스〉** - 푸드 테라피, 영양상담 및 영양정보 제공 등 - 저염식, 환자식, 건강식 등 특별 식단 교육	주 1회 월 3회	90분
	〈문화여가지원서비스〉 - 문화/예술/공예활동, 연극/영화/공연/전시회 관람, 나들이 등	월 1회	90분
부가 서비스	**개별관리** - 이용자의 의료상태,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에 대해 통합관리	분기 1회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영양척도(Determine Your Nutritional Health 체크리스트)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인 이내 이용자 가능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1 : 다수(차량이동 시 차량 1대당 제공인력 1명)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26 【991913】 스마트 도시(김제) 지역 인재 육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김제시
목 적	•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향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산업형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 8세 ~ 만 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스마트 기술 관련 인재양성 교육을 원하는 자 * 중복이용 제한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욕구기준 / 제출서류 스마트 기술 관련 인재양성 교육을 원하는 자 /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1등급 이용자 2. 학교, 시군 맞춤형 복지팀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2~3등급)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없음 2.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진로탐색 및 라이프 코칭」 – 초·중등 정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 교육학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공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진로 탐색 및 라이프 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스마트 교육」 – 초·중등 정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 교육사로 관련프로그램 민간 자격 취득자 – 4차 산업 관련 전공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코딩, 4차 산업, 기본 서비스의 교육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교육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스마트기술 이용한 농업 및 산업현장 전문기술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80,000원 /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160,000원 /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 140,000원 / 6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에게 스마트 교육 전체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진로탐색 및 라이프코칭은 필요시 제공(60분 이하)

항 목	내 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스마트 교육 ①~④ 전체 제공)** ※ 진로탐색 및 라이프코칭은 필요시 회당시간 120분 안에서 60분 이하로 운영	월 3회 주 1회	120분
	① **사물인터넷 기술 교육 프로그램** : 사물 인터넷의 원리를 알아보고 IOT 제품 제작 및 체험(사물인터넷의 원리 이해 등)		
	② **3D프린팅 기술의 원리 및 3D펜 적용 교육 프로그램** : 3D프린팅의 설계와 출력을 통해 창작 욕구를 실현(3D펜 실습, 3D프린터 설계와 출력 실습 등)		
	③ **코딩, 드론기술 교육 프로그램** : 4차 산업 SW기술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으로 SW가 바꿀 수 있는 미래세상을 창작해보는 융합코딩 체험(블록코딩, 피지컬 컴퓨팅 실습 등)		
	④ **로봇기술 교육 및 로봇 교육 프로그램** : 6차 산업의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실제 로봇 작동 설계와 제작과정을 체험 (로봇의 작동원리와 구조, 스마트 토이 로봇 체험)		
	(현장 체험활동) 하이테크 기술 체험학습 진행 (스마트 교육내용 관련 기술 현장 체험)	월 1회	240분
부 가 서 비 스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연간 2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초기상담, 사전검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서비스 제공
    (월별 서비스 제공내용 및 익월 제공계획을 보호자에게 발송)
  - 4단계 : 서비스 종료 및 보고서 작성, 사후 검사 실시
    (기본서비스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항 목	내 용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 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기본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진로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명(부가서비스 1: 다수)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27 【992113】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행복드림 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정읍시
목 적	• 저소득 중장년층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정서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 가구 기준 : 1인 가구 • 욕구기준 : 정서·신체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

욕구기준	제출서류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중장년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시군 읍면동장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추천한 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정서행동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없음 2, 3.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항 목	내 용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1. 신체건강 프로그램 <신체운동 서비스> ○ 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과 운동종목 동일)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신체건강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 체육 및 운동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레크리에이션학과 제외)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운동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운동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운동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신체건강운동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영양관리 서비스> ○ 영양사, 조리사 ○ 영양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양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양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양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푸드테라피, 영양전문가, 운동영양지도사 등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2. 정서지원 프로그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정서지원 해당 민간자격 취득자 ○ 정서지원 프로그램 해당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정서지원 프로그램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 신체건강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 162,000원 / 18,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구 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1. 신체건강 프로그램 ❍ 신체운동서비스 : 필라테스, 요가 등을 통한 신체건강운동 프로그램 / 주1회 월3회 / 60분 기본 서비스 / 2. 정서지원 프로그램 ❍ 미술, 음악활동: 미술 및 음악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 미술활동 : 공예, 만들기, 그리기 등 - 음악활동 : 악기 연주(하모니카, 사물놀이 등), 음악교실(노래배우기) 등 / 주1회 월3회 / 60분 기본 서비스 / 3. 영양관리서비스 ❍ 푸드테라피, 전문적인 영양정보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 활동 / 월1회 / 120분 기본 서비스 / 4. 문화여가 프로그램 ❍ 뮤지컬·연극·영화감상, 미술관 박물관 관람, 지역축제 참여 등 ❍ 마음치유 관련 특강(연 1회 필수) / 월1회 / 60분 부가 서비스 / 개별관리 / 분기별 1회 / 6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 상담을 통한 욕구조사, 등록 – 2단계 :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과목 설정 및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사회적고립감, 우울척도(통합적한국판 CES-D)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 이상 향상 • 집단 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1 : 다수(차량이동 시 차량 1대당 제공인력 1명)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28 【992313】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목 적	•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영양상태를 관리하여 건강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적 서비스 필요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가구 기준 : 거동 불편, 신체 기능 저하, 돌봐줄 가족 부재,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욕구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장애인(거동불편, 신체기능저하, 가족부재등), 고도 비만(만성질환) 등, 식이요법이 필요한 장애인, 심각한 편식 등 식습관을 조절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욕구기준 / 제출서류 혼자 식사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동일 순위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대상자 / - 제출서류 없음 - 시설 퇴소 또는 병원 퇴원한 만성질환자 / - 시설 퇴소증명서 또는 병원 입퇴원확인서와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명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수술 입·퇴원한 단기 돌봄 필요 대상자 / - 입퇴원확인서(30일이상 입원후 퇴원자) - 독거(1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 - 제출서류 없음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기관 • 제공인력 1. 필수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의한 임상영양사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2. 그 외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필요인력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5만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25,000원 / 25,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정이 아닌 자) / 200,000원 / 5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인 자) / 175,000원 / 75,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20회, 주5회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주기</th></tr>
<tr><td>① 사전검사</td><td>·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반찬·도시락 또는 완전조리식품 중 선택)
· 이용자 식사 기호 및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 식사 변경</td><td>초기
1회</td></tr>
<tr><td>② 식사지원
+
영양관리</td><td>· 반찬·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반찬·도시락 배달</td><td>주 3회~5회 주기 중 선택하여 제공</td></tr>
<tr><td>완전조리식품 배달</td><td>저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유동식 등을 포함하여 선택가능하도록 제공</td></tr>
</table>
·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table>
<tr><th>일반식</th><th>치료식</th><th>저작 및 연하도움식</th></tr>
<tr><td>• 1식 4찬 이상
• 간식(우유, 유제품, 과일 등 선택)</td><td>• 1식 4찬 이상
• 간식(우유, 유제품, 과일 등 선택)</td><td>• 1식 3찬 이상
• 간식(우유, 유제품,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td></tr>
</table>
· 상시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추진 / 주 1회 이상
· 사전영양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 영양상태, 영양소 섭취 균형상태 등 변화척도 분석</td><td>주 5회
월 20회</td></tr>
<tr><td>③ 모니터링</td><td>· 식사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식사제공주기, 영양지수, 식사량, 메뉴 및 맛, 영양 등 만족도조사)</td><td>월 1회</td></tr>
</table>

1) 식사 지원 :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

종류	구성	형태 및 주의 사항	제공 유형
일반식	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	밥의 형태,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식품	도시락 배달 (재가방문형)
치료식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 상시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주 1회 이상)
- 타임스탬프(시간 기록된 사진) 어플 등을 통한 데일리 식단 일지 관리

2) 영양관리 서비스

-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영양상담 및 교육, 타 분야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영양 중재 내용
  - ·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추적, 지속적인 식사 계획 관리
  - · 영양상담 :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 · 타 분야연계 :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영양 관리 효과를 극대화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단계
    -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 사전검사(필수 실시-영양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결과지 첨부)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 사용, 영양개선율 분석
    -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식단 내용 선택) /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필요시 서비스 제공 계획 조정, 서비스 중간점검
  -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 · 사후검사(필수실시)
    -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 서비스 종료 통보
      * 사전검사와 동일한 평가도구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보호자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제공인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장애인영양지수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 이상 향상 -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조사 활용하여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29 【992413】 중장년 정서지원 서비스(신규)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임실군
목 적	•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중장년의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 및 삶의 가치 변화등의 이유로 우울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악기연주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만40세~만59세 이상 • 욕구 기준 : 예술활동을 통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원하는 자

욕구기준	제출서류
예술활동을 통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원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시군 및 읍면동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2. 동순위인 경우 연령이 높은 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시군 및 읍면동 등 공공기관의 연계 의뢰서 도는 추천서 2, 제출서류 없음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 제공인력
1. 정서교육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석사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가족, 사회복지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음악,미술,예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음악,미술,예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악기교육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음악활동 해당 악기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음악활동 해당 악기 분야 민간자격증 또는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0,000원	2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이용자 욕구에 예술활동 분야를 선택 제공하고 공연 및 전시회 등 사회참여 활동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자존감 및 사회참여 활동 제고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악기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악기 중 택1하여 악기 지도	주1회, 월4회	60분
	2. 정서지원서비스 - 심리상담, 놀이치료, 예술치료(음악, 미술 예술통합) 등을 활용한 자아성찰 및 새로운 사회적관계 형성 등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주1회, 월4회	60분 *1:1은 40분
부 가 서 비 스	1. 향상음악회 참여	연 1회	결과보고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
	2.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3.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	월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 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및 국악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악기교육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변화를 공유하여 서비스 제공에 반영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사회적고립감, 우울척도(통합적한국판 CES-D)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 이상 향상
• 집단 규모 : 제공인력 1명당 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